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질의답변서

질의 1.

본문내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B, C 노선 간 환승시 환승 기본운임은 0원으로 적용하고, 추가거리 운임은 총통행거리에 따라 산정함(장거리 통행에 따른 추가거리운임 할인은 미적용함)

질의내용

- 교통수요 추정시 GTX-A, GTX-C 노선의 할인요금체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할인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면, 현재 실시협약 완료된 GTX-A노선과 협상중인 GTX-C의 할인요금체계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질의합니다.

[답변]

GTX-A노선의 할인프로그램은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GTX-C노선의 할인프로그램은 그 적용 여부를 사업신청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교통수요 및 운임 수입 추정 결과를 함께 제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2.

본문내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B, C 노선 간 환승시 환승 기본운임은 0원으로 적용하고, 추가거리 운임은 총통행거리에 따라 산정함(장거리 통행에 따른 추가거리운임 할인은 미적용함)

질의내용

- 할인프로그램 적용시 GTX노선간 방향별 요금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승시 별도의 추가 운임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본사업 운임체계는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며, 제안하는 운임체계에 따른 합리적인 교통수요 및 운임수입 추정 결과를 제시합니다.

질의 3.

본문내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B, C 노선 간 환승시 환승 기본운임은 0원으로 적용하고, 추가거리 운임은 총통행거리에 따라 산정함(장거리 통행에 따른 추가거리운임 할인은 미적용함)

질의내용

- “총통행거리”의 의미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B, C 노선 전체의 환승거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총통행거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B, C 노선 전체의 이용거리를 의미합니다.

질의 4.

본문내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B, C 노선 간 환승시 환승 기본운임은 0원으로 적용하고, 추가거리 운임은 총통행거리에 따라 산정함(장거리 통행에 따른 추가거리운임 할인은 미적용함)

질의내용

- 추가거리운임 산정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B, C 노선간 환승시 이용한 “총통행거리”에서 기본구간 10km를 제외한 나머지 거리에 대해 추가거리운임을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총통행거리에서 10km를 제외한 나머지 이용거리에 대해 추가거리운임을 산정합니다.

질의 5.

본문내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B, C 노선 간 환승시 환승 기본운임은 0원으로 적용하고, 추가거리 운임은 총통행거리에 따라 산정함(장거리 통행에 따른 추가거리운임 할인은 미적용함)

질의내용

- 본사업노선의 신설 및 재정구간과 기존선 공용구간 모두 할인 프로그램의 제안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신설 및 재정구간과 기존선 공용구간 모두 할인프로그램 제안 대상입니다.

질의 6.

본문내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B, C 노선 간 환승시 환승 기본운임은 0원으로 적용하고, 추가거리 운임은 총통행거리에 따라 산정함(장거리 통행에 따른 추가거리운임 할인은 미적용함)

질의내용

- 사업노선 인근 별도운임을 부과하는 민자철도 노선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B(→C)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의 경우 관리운영권이 본사업 운영기간 중에 만료됩니다. 타 노선의 관리운영권 만료 이후 운임 반영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인근 민자철도 노선의 관리운영권 만료 이후에도 관리운영권 만료 이전의 운임을 동일하게 가정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질의 7.

본문내용

- ⑥ 청량리역 우선시공 구간(역사 포함)과 관련된 유지보수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C노선별 이용수요에 비례하여 실비정산함
 - * 유지보수비는 본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의 이용수요 비율을 3:7로 가정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질의내용

- 재정구간을 본사업시행자가 위탁운영하는 경우, 청량리역 운영비용 중 유지보수비 이외의 운영비(역무인력 인건비 및 제경비, 전력비 등) 산정도 필요한 바, 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선행사업자인 C노선 사업자가 제시하는 역무수행 계획, 조직규모, 관련 비용 등)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본 노선 사업신청자가 자율로 산정하되 동일한 분담비율(3:7)로 가정하여 산출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청량리역 운영비는 사업신청자가 산정하되, 유지보수비와 동일한 분담비율(3:7)로 가정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8.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1) 사업시행자는 재정구간 및 기존선 공용구간 운영시 해당구간의 시설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토록 하며, 국가철도공단 등에 철도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질의내용

- 재정구간 시설(선로 및 역시설)의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사용료를 납부받는 국가철도공단인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구간의 운영(역무운영)주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구간의 역무운영에 대해서는 국가(혹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별도로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본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서에 포함해서 제시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재정구간의 역무운영을 담당하는 경우, 향후 중앙선 등 고속철도차량의 운행에 대응하는 역무운영도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재정사업 구간의 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관련 운영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9.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1) 사업시행자는 재정구간 및 기존선 공용구간 운영시 해당구간의 시설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토록 하며, 국가철도공단 등에 철도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2) 사업시행자는 공용역사(별내역, 왕숙역, 평내호평역, 마석역) 사용에 따른 역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상기 1)항에 따라 재정구간과 기존선 공용구간 철도시설사용료 납부로 선로 및 역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가 완료되는 것인데, 2)항에서 기존선 공용역사에 대한 역시설사용료가 별도로 언급된 것은 해당 역시설사용료가 사업신청서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어서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철도시설사용료(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는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본문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질의 10.

본문내용

- ① 설계 및 시공범위
사업신청자는 ... (중략) ... 재정사업 구간(용산역 ~ 상봉역(경춘선 접속부) 구간)에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설(열차 1편성당 소요량수 증대로 인한 승강장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추가적인 시설 설치로 인한 사업비는 총민간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며, 열차 1편성당 소요량수 증대로 인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이외 사유로는 총사업비를 증액 제안할 수 없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질의내용

- 효율적인 열차운행계획 수립을 위해 재정사업 신설구간(용산~상봉)에 주박 및 회차선 등의 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또한 1편성당 소요량수 증대로 주박 및 회차선, 승강장 등이 확장될 경우, '1편성당 소요량수 증대로 인한 추가적인 시설 설치'로 간주하고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제안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8량 길이 주박선 추가설치 : 6량 길이 주박선(총사업비 100%이내 반영) + 2량 길이 주박선(총사업비 증액 120% 이내 포함)

[답변]

- 재정사업 구간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도록 이를 포함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 열차 1편성당 소요량수 증대로 인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이외 사유로는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제안할 수 없습니다.

질의 11.

본문내용

- ② 사업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중략)
 - 사업신청자는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 정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정속도 80km/h 이상이 되도록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생략)

질의내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제4편 제2장(1,614페이지)'에 표정속도 산정기준이 두 조건(TPS, 상업운전)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표정속도 80km/h이상' 기준을 'TPS' 산정기준으로 적용하여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사업신청서 작성시에는 TPS 산정기준으로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12.

본문내용

- ② 사업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중략)
 - 사업신청자는...(중략)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서 서울역 또는 청량리역까지의 소요시간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질의내용

- '소요시간 30분 이내'의 기준은 '인천대입구역~서울역'과 '청량리역~마석역' 구간의 'TPS' 산정기준 소요시간을 의미하는지 질의합니다. 소요시간 산정에 적용되는 정차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소요시간 30분 이내의 기준은 인천대입구역⇄서울역 및 청량리역⇄마석역 구간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고, 정차시간은 30초 이상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13.

본문내용

- ⑤ 사업신청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의 내용을 준수하여 재정사업 구간으로의 중앙선 열차 운행(21회/일)이 가능하도록 열차운영계획을 수립 및 제안하여야 함

질의내용

- 중앙선 열차운행 21회/일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제2편 제6장(408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중앙·강릉선과 차량시스템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적용하여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구분	중앙선		강릉선		계
	EMU 260	EMU 180	EMU 260	EMU 180	
운행횟수	4 회/일	6 회/일	4 회/일	7 회/일	21 회/일

[답변]

- 사업신청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의 중앙·강릉선과 차량시스템별 운행횟수(질의내용에 포함된 표 상의 운행횟수)를 각각 준수하여(계 21회/일) 열차운영계획을 수립 및 제안하여야 합니다.

질의 14.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15) 재정구간(용산~상봉)이 먼저 개통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개통에 따른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이 우선개통하는 경우 본사업의 차량기지가 준공되기 전까지 차량검수, 유치, 주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재정구간 선개통 시, 열차 운행구간이 ‘용산역~상봉역(재정구간)’ 또는 ‘용산역~마석역(재정구간+기존선 공용구간)’ 인지를 질의드립니다. 재정구간 선개통에 대한 열차운영계획 수립 시, 혼잡률 130%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본문에 제시된 침두시 배차간격 7.5분 초과할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재정구간 선개통 시 열차 운행구간은 용산역~상봉역이고, 혼잡률 130%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침두시 배차간격이 7.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15.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22) 광역급행철도사업에 포함된 차량구입계획 및 수송수요를 고려하고, 신설선만 우선 개통하는 경우 단계별 운영계획을 포함한 통합 열차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신설선’의 의미는 ‘민자구간 또는 재정구간’만을 의미하는지, ‘민자+재정구간’를 의미하는지 질의합니다. 신설선 선개통에 대한 열차운영계획 수립 시, 혼잡율 130%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본문에 제시된 첨두시 배차간격 7.5분 초과할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신설선의 의미는 민자+재정구간(기존선 공용구간 제외)을 의미하며, 신설선 선개통 시 혼잡율 130%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첨두시 배차간격이 7.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16.

본문내용

- (3) 영업시간 및 첨두/비첨두시 배차간격은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되, 기존선 공용구간을 제외한 본사업 신설구간 및 재정사업 구간에서의 첨두시 배차간격은 7.5분을 초과할 수 없음

질의내용

- 첨두시 GTX-B 열차의 배차간격을 무조건 최소 7.5분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중앙선 등이 혼용운영됨을 감안하여 평균 배차간격을 7.5분으로 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첨두시 모든 배차간격이 7.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며, 실제로 적용할 배차간격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17.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7) 차량기지는 본사업의 열차운영, 검수량(경정비/중정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설규모(입출고선 포함)로 계획하여야 하며, 경춘선·중앙선 열차운행에 지장을 최소화해야 하며, 재정구간(용산~상봉)이 선개통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검수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재정구간 선개통 시, 마석 차량기지 미완공으로 인하여 본사업 차량의 정비를 위한 별도의 검수시설 및 검수운영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 ① 사업신청자가 재정구간 사업계획에서 기수립된 검수시설계획을 기반으로 검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② 상기 ‘검수시설 운영계획’이 재정구간 인근 차량기지 활용방안 또는 재정구간 내 경정비설비 구축 및 운영계획을 의미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재정구간(용산~상봉)이 선개통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검수시설 운영계획은 재정구간 인근 차량기지 활용방안 또는 재정구간 내 경정비 설비 구축 및 운영계획을 의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18.

본문내용

- 기존선 공용구간을 포함한 본사업 전 구간(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마석역에 도착하는 열차 기준)의 1일 최소 열차 운행횟수는 92회/일임. 반대 방향 또한 같은 조건을 반영하고, 사업신청자는 최소 운행횟수를 고려하여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질의내용

- 본사업 전 구간의 1일 최소 열차 운행 횟수(92회/일)와 관련하여, 전 구간의 의미가 모든 역을 다 정차해야만 하는 건지 질의합니다.
예시)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일부 역들을 정차하지 않고 마석역까지 운행시에도 1일 최소 열차 운행횟수(92회/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 전 구간 모든 역을 정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1일 최소 열차 운행횟수 92회/일을 만족하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적용할 열차운영계획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19.

본문내용

- (1) 사업시행자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시설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사업을 자신의 책임으로 시행할 수 있음

질의내용

- 본사업 신설구간(인천대입구역~용산역) 외 재정사업구간(용산역~상봉역), 기존선 공용구간(상봉역~마석역)에 부속사업계획 제안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답변]

- 부속사업은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안 가능합니다.

질의 20.

본문내용

- (1) 사업신청자는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계획은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안하되, 역세권 복합개발 또는 건물형 출입구를 활용한 공공주택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음

질의내용

- 본사업 신설구간(인천대입구역~용산역) 외 재정사업구간 (용산역~상봉역)에 부대사업계획 제안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답변]

- 부대사업은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안 가능합니다.

질의 21.

본문내용

- 사업신청자가 건물형 출입구를 제안하는 경우 해당 부지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보상비는 1,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보상비(1,150억원) 초과분을 사업시행자가 총민간사업비 외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비 초과 제안이 가능함
- 부대사업 이익은 역세권 복합개발 또는 주택, 상가 등 공급 시 발생하는 매각이익, 임대수익 등을 의미함

질의내용

- 보상비 1,150억에 부대사업 관련 보상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부대사업 이익 산출시, 부대사업 관련 보상비를 비용 계정으로 하여 이익을 산출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보상비 1,150억원에는 부대사업 관련 보상비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부대사업 이익 산출 시 비용에 해당하는 부대사업 관련 보상비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질의 22.

본문내용

- (2) 사업신청자는 부속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부속사업계획의 수용여부를 결정함

질의내용

- 본 사업 사업신청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부속사업계획은 평가요소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업신청자가 부속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어느 항목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바,
 - ① 부속사업계획을 사업신청서 제7권 “부대사업의 구체성”에 포함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 ② 그렇지 않다면 본보고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본보고서에 포함된다면 본보고서 제2~4권 중 어디에 포함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부속사업계획은 제7권 “부대사업분야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질의 23.

본문내용

-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시설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사업을 자신의 책임으로 시행할 수 있음

질의내용

- 차량기지 상부에 태양광 설치사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대사업으로 구분되는지 부속사업으로 구분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태양광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부대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질의 24.

본문내용

- 사업관리기관은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감독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사업관리기관이 공동으로 철도차량 제작감독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질의내용

- 사업신청서 작성시 사업비에 해당비용을 가정하여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해당 비용은 견적, 원가계산 등에 의한 방식 중 최저가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질의 25.

본문내용

- ⑦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국토교통부, 2021.6)”에 반영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는 아래 조건을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서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과 본사업 부천종합운동장역 직결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본사업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를 제외하여 본사업 총사업비를 확정함

질의내용

- 서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과 본사업 부천종합운동장역 직결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시 총사업비 증액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추가 정거장 설치 또는 열차 소요량수 증대를 제안하는 경우에 한해 총사업비 증액이 가능합니다.

질의 26.

본문내용

- (8) 공통 및 일반사항
 - ⑪ 사업신청자는 본사업노선 이용자를 구분·확인할 수 있고, 타 노선 사업시행자와의 합리적인 운임 정산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임징수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을 참고하여 서울역에서의 환승을 고려한 환승게이트 설치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질의내용

- 서울역은 재정사업구간인 바 해당구간의 사업신청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사업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사업신청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을 참고하여 서울역에서의 환승을 고려한 환승게이트 설치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질의 27.

본문내용

- (13) 사업신청서 작성 시 관련기관 협의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여름·가을철 생태계조사 등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첨부토록 함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사업신청서의 기본 제출서류 내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별권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록)으로 제출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부록으로 별도 제출(제출서류 페이지 합산에 불포함)합니다.

질의 28.

본문내용

- (2) 사업신청서 제출장소: 국가철도공단 본사 2층 대회의실(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문의: 042-607-4023, 4024)
고시문 : 국가철도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

질의내용

- 사업신청서 제출장소가 입찰안내서(본사 2층 대회의실)와 고시문(본사 3층 대회의실)이 서로 상이하오니 사업신청서 제출장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사업신청서 제출장소는 국가철도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입니다.

질의 29.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가) 공통분야

②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제22조(승강장)

② 승강장의 수는 수송수요, 열차운행 횟수 및 열차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 길이는 여객열차 최대 편성길이(일반여객열차는 기관차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지상구간의 일반여객열차·간선형 전기동차는 10미터
2. 지하구간의 일반여객열차·간선형 전기동차는 5미터
3. 지상구간의 전기동차는 5미터
4. 지하구간의 전기동차는 1미터

(나) 노반분야

② 철도설계기준(노반편) (국토교통부)

4.2.3 승강장

(3) 승강장 길이

② 과주여유거리는 전동차 경우 지상구간은 5 m, 지하구간은 1 m, 일반의 경우 지상구간은 10 m, 지하구간은 5 m 를 기준으로 한다. 단, 열차자동운전장치(ATO) 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전기동차 구간의 경우에는 승강장 여유길이를 삭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본사업과 관련하여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승강장 여유길이 기준과 ‘철도설계기준’의 승강장 여유길이 중 승강장 여유길이 기준이 불일치합니다.
- 상위법 규정에 따르면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 GTX-B 기본계획과 같이 철도설계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상위법에 따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30.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라) 향후 승강장안전문과 차량 간의 연동 인터페이스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향후 관리운영권 취득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는 인천대입구-마석 구간을 운행하여야 하며, 재정사업 구간은 중앙선 열차가 용산역까지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열차 길이 및 출입문 위치가 상이함으로서, 재정사업 구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시 향후 GTX-B 열차와 중앙선 열차가 정거장에 혼용으로 정차가 불가피한 바, 스크린도어를 겸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본사업 제안시 중앙선 어떤 열차를 기준으로 제안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 기본계획보고서 제4편 제2장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31.

본문내용

- * 본사업 신설구간 및 재정사업 구간과 기존선 공용구간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운임은 2,733원을 부과하고, 추가거리운임은 신설구간 및 재정사업 구간과 공용구간별 이용 거리에 따른 가중평균치를 부과함. 단, 사업신청자는 이용거리와 운임 간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임체계를 제안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최종 결정함

질의내용

- 이용 거리에 따른 가중평균치라 함은, 구간별 승차거리와 구간별 추가요금을 각각 비율별로 산출한 평균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신설구간 및 재정사업 구간과 공용구간별 이용 거리에 따른 가중평균치를 의미합니다.

질의 32.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2) 사업신청서는 본 [첨부1. 사업신청서 작성지침]에 포함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
- (17) PQ 서류, 요약보고서, 본보고서, 부속서류 작성시 한글은 모두 신명조체 12point,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oint, 타이틀은 14~20point의 글자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80%로 하여 분명하며 읽기 쉬운 형태로 작성함

질의내용

- 2.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17)에서 한글은 모두 신명조체 12point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1. 사업신청서 작성지침에 첨부된 <양식>을 보면 입력란의 한글이 중고딕으로 설정되어 있고, 글자크기 또한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양식>을 이용한 자료 작성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없이 작성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 사업신청서 작성지침 2.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17)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질의 33.

본문내용

-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금액 한도 내에서 직영 또는 위탁 방식으로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시에는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해야 함. 위탁 운영자 선정 시 낙찰금액을 반영하여 운영비용을 사후 변경하고(감액된 경우에 한정함), 경쟁입찰로 인한 운영비용의 감액 금액(위탁 운영자 낙찰금액을 반영한 차액)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질의내용

- 일부 부분에 대한 위탁운영시에도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 일부 부분에 대한 위탁운영시에도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합니다.

질의 34.

본문내용

- *** 사업신청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을 검토하여 재정사업 구간(용산역 ~ 상봉역(경춘선 접속부) 구간)에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설(열차 1편성당 소요량수 증대로 인한 승강장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추가적인 시설 설치로 인한 사업비는 총민간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며, ~ 하략
- - 사업신청자는 이용수요 및 혼잡률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 상 본사업 열차 편성(6량 1편성, 총 21편성)을 증량 또는 증편하여 제안할 수 있음

질의내용

- 민자구간의 열차편성을 8량 1편성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 재정구간의 시설물(정거장, 승강장 등)에서 8량 1편성의 열차운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만일, 사업신청자가 8량 1편성으로 제안할 경우, 재정구간에 필요한 시설(승강장 확장, PSD, 건축 및 E&M 분야 등)을 사업신청자가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공사” 입찰공고서(국가철도공단, 2022.8.3.)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을 참고하여, 재정사업 구간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도록 이를 포함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35.

본문내용

- * 사업신청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의 내용을 준수하여 재정사업 구간으로의 중앙선 열차 운행(21회/일)이 가능하도록 열차운영계획을 수립 및 제안하여야 함
- 성과요구수준서 (115page)
2) 세부 고려사항 가) 신호방식
본사업구간의 열차제어방식은 ETC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인접선구와 연계운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되, ATP 및 시험선 구축중인 KTCS-2 시스템 적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단계에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질의내용

- 본사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정 사업구간의 궤도구조, 신호(ETCS, KTCS-2) 및 통신 시스템 등 시설계획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공사” 입찰공고서(국가철도공단, 2022.8.3.)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36.

본문내용

- (2)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시운전기간 포함)

질의내용

- 사업기간에 예상 공사착수일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제안자별로 다를 수 있으니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예상 공사착수일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사업신청서 작성시에는 2024년 상반기 착공 및 2030년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신청자 스스로 공사착수일을 제안하되, 실제 공사착수일은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합니다.

질의 37.

본문내용

- 사업신청자 간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하여 총사업비에 계상하는 건설사업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변경 또는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위한 입찰 등의 과정에서 실제 건설사업관리비가 증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감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정산함

질의내용

- 건설사업관리비는 시공부문과 설계부문으로 구분되며, 시공부문 건설사업관리비는 본문과 같이 산출금액의 10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설계부문 건설사업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계약하게 되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산출금액의 100%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공부문을 제외한 설계부문 건설사업관리비는 산출금액의 100% 이하로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설계단계 포함)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38.

본문내용

- (1) 본사업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귀속됨

질의내용

- 일반적인 철도/도로 BTO 사업 RFP에서는 보상비가 사실상 이행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총사업비 중 보상비를 제외한 건설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총사업비가 아닌 건설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39.

본문내용

- (7)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부대사업을 시행하며,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으로 정하는 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순이익 미달분을 처리·부담해야 함. 부대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으로 인한 목표수익을 현재가치로 조정하여 건설보조금을 감액 조정함

질의내용

- 현재가치로 조정시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지 질의합니다(예를 들어 본사업의 사업수익률을 적용하거나, 2021년 민자사업기본계획 제65조의2 제1항의 재무적 실질 할인율 4.5%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 할인율을 포함한 건설보조금 감액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40.

본문내용

- (4) 부가가치세 영세율 : 사업신청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883호(2021.1.5.)]」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본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함. 향후 관련법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함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다양한 재화 및 용역이 규정된 바, 상기 RFP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본사업은 철도사업인 바, 동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규정이 본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단, 실제 영세율 적용여부는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세법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질의 41.

본문내용

- (9) 건설보조금 투입조건 : 사업신청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자기자본을 전액 투입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조건으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질의내용

- 자기자본을 전액 투입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기자본의 투입이 완료된 분기부터 건설보조금 투입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자기자본의 투입이 완료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건설보조금 투입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 건설보조금을 건설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사업비 투입스케줄에 따라 건설보조금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신청서 작성시 특정 분기에 민간사업비 및 민간재원조달금액이 음(-)의 금액이 되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 자기자본 투입이 완료된 다음 분기부터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분기별로 건설보조금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42.

본문내용

- ② 사업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①에 따른 9개 정거장(왕숙역 포함 시 10개 정거장) 외 추가 정거장의 설치를 제안할 수 있음. 추가 정거장 설치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추정 총사업비 38,421억원(2020년 12월 31일 기준, 보상비 1,150억원 포함)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추가 정거장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증액 제안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건설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자는 위 (6)의 추정 건설보조금 18,636억원을 초과하여 건설보조금을 제안할 수 없음

질의내용

- 상기 내용은 추가 정거장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증액제안분은 추가정거장 설치로 인해 추정총사업비 38,42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최대 추정총사업비의 20%를 한도)을 의미하며, 동 증액제안분에 대해 건설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추가정거장 미설치시 산정한 총사업비가 37,421억원이고, 추가정거장 설치로 인해 총사업비가 2,000억원 증가된다고 가정하면 추정총사업비(38,421억원)를 초과하는 1,000억원(37,421억원+2,000억원-38,421억원)에 대해서만 건설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추가 정거장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증액 제안분에 대해서는 건설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질의 43.

본문내용

- 본사업 신설구간 및 재정사업 구간 기본운임(기본구간 10km까지)은 2,733원(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가거리운임은 228원/5km(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안하여야 하고, 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를 적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 본사업의 기본요금 2,733원(2020년 12월 31일 기준)은 GTX-C사업의 기본요금(2,719원, 2019년 12월 31일 기준)에 물가기준시점의 차이를 반영하면 동일금액이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다만,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기준시점이 변동(2015=100기준에서 2020년=100기준)되어 과거 기준시점(2015년=100기준)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반영시 본사업의 기본요금 2,733원(=2,719원×105.67(20년12월)/105.12(19년12월))이 산정되나, 최근(2020년=100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반영시 2,736원(=2,719원×100.33(20년12월)/99.719(19년12월))이 산정되어 RFP에 제시된 금액과 3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최근 기준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기준으로 본사업 기본요금을 2,736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2015년=100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44.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4) 출자자의 재무제표
 - ① 손익계산서는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손익계산서를 <양식9>를 참고하여 작성함
 - ② 재무상태표는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재무상태표를 <양식10>를 참고하여 작성함
 - ③ 재무비율은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재무비율을 <양식11>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동 업계 재무비율은 입수 가능한 최근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제시된 비율을 적용하되 산출근거를 첨부함

질의내용

- <양식9>, <양식10>, <양식11>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는 고시일 직전 최근 3년인 2019년, 2020년, 2021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는 2019년, 2020년, 2021년 재무제표입니다.

질의 45.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2)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간(또는 실적이 있는 기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질의내용

-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산정시 고시일 기준 직년 5개년인 2017년 - 202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2017년~2021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질의 46.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3)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려는 금액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대출의향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내용

- <양식14-1>대출의향서, <양식14-2>대출확약서, <양식14-3>조건부대출확약서 양식상 타인자본 조달금액을 기입하게 되어 있지 않아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려는 금액의 1.0배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양식14-1>, <양식14-2>, <양식14-3>의 문구상 의미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려는 금액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양식14-1>, <양식14-2>, <양식14-3>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질의 47.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주) 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양식3>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함

질의내용

- 34페이지 주석의 <양식3>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RFP에는 <양식3> 양식이 없어서 <양식 3-1>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양식3-1>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질의 48.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양식3-2>, <양식4> <양식4-1>, <양식5>

질의내용

- 설립예정집합투자기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설립예정집합투자기구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기구이므로 해당 PQ서류(<양식3-2>설립예정법인의 구성사업체 현황, <양식4>서약서, <양식4-1>인감신고서, <양식5>출자자 구성 등) 작성시, 설립예정집합투자기구의 '예정집합투자업자'의 명의의 인감 및 날인을 사용하고 '예정집합투자업자'의 내용을 기재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출자자(기관투자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질의 49.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주) 1. 매출액 및 총자산은 고시일 기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질의내용

- 고시일을 기준으로 공표된 가장 최근 감사보고서상 회계연도는 2021년 회계연도인 바, 주1의 가장 최근 회계연도는 2021년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 가장 최근 회계연도는 2021년 회계연도를 의미합니다.

질의 50.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양식9>, <양식10>, <양식11>, <양식 21-1>, <양식 21-2>

질의내용

- <양식9>, <양식10>, <양식11>, <양식 21-1>, <양식 21-2>의 경우 회계법인 인감 날인이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 회계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질의 51.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양식9>, <양식10>

질의내용

- 출자자별 특성(업종, K-IFRS 적용 여부)에 따라 출자자별 재무제표 양식이 사업신청서상 양식과 상이한 경우, 출자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양식을 수정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질의 52.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양식9>, <양식10>

질의내용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은 ‘별도 재무제표’인지 또는 ‘연결 재무제표’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질의 53.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1. 보상비는 1,150억원을 한도로 사업신청자가 산정 및 제안함
2.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경상 금액 산출함
3.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경상 4.5%를 적용함

질의내용

- 주3의 현재가치 기준시점은 가격기준시점인 2020년 12월 31일로 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질의 54.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양식31-5>

질의내용

- <양식31-5>의 연도별 물가지수 산정시 연도별 물가지수를 해당연도 4분기의 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바,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매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분을 적용하고 있으며, 타 사업에서도 연도별 물가지수는 기초물가(1분기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3. 의 연도별 물가지수를 “해당연도 4분기”가 아닌 “해당연도 1분기”의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바랍니다.

[답변]

- 해당연도의 물가지수는 직전년도(직전년도 4분기)까지의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55.

본문내용(사업신청서 평가계획)

- 2.3 재무능력(F)-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국가공인 신용평가기관(NRSRO)이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고시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채 및 기업어음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질의내용

- 회사채 및 기업어음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은 고시일 기준으로 남아있어야 하는지 혹은 제출일 기준으로 남아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해당 평가기관의 유효기간 기준을 따릅니다.

질의 56.

본문내용(사업신청서 평가계획)

- 2.3 재무능력(F)-①-㉠
- 출자예정금액 300억원 이상인 출자자 : 2020년 기준 회사채 평가 신용등급 B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평가 신용등급 A3- 이상인 경우
- 출자예정금액 300억원 미만인 출자자 : 2020년 기준 출자자의 회사채 평가 신용등급 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평가 신용등급 B0 이상인 경우

질의내용

-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서의 경우 고시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2.3 재무능력(F)-①-㉠-○, ○)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기 "2020년 기준"의 의미가 신용평가등급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신용평가서에 기재된 '재무제표기준일'의 연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일'의 연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서 발급의 편의를 위해 2020년 기준 뿐 아니라 선택적으로 재무제표기준일의 연도를 의미한다면 2021년 기준으로도, 평가일의 연도를 의미한다면 2021년 또는 2022년 기준으로도 제출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 2021년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질의 57.

본문내용(사업신청서 평가계획)

- [첨부2] 사업신청서 평가계획 p.10 ㉠
설립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출자자는 기관투자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투자자의 투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함
- [첨부1] 사업신청서 작성지침 p48, p49, p74 <양식21-2>, <양식13-1>, <양식13-2>

질의내용

- <양식21-2>의 가입예정금액(A)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첨부2. 사업신청서 평가계획 p.10 ㉠에서는 본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확약하는 내용의 투자확약서(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투자 예정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① 투자예정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을 투자확약서(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에 대한 별도 양식이 제시되지 않아 양식은 <양식13-1>, <양식13-2>를 일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와 (수정 예시) '사업신청법인에 대한 출자예정자로서' →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인 000의 투자예정자로서'
 - ② <양식13-2>로 작성하는 경우 동 양식에는 투자예정금액을 적는 란이 없는데 동 투자예정금액을 기재하는 란을 추가하여 작성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양식 13-1>, <양식 13-2>를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58.

본문내용(사업신청서 평가계획)

- ④ 본 고시문에서 기관투자자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17호 각 목에 따른 자(단, 민간투자법 제2조 제17호 카목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외) 및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을 의미하며, ①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법인이 재무적투자자가 되는 경우 해당 기금운용법인은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①항에서는 기금운용법인을 정의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정의하고 있는 바, 평가계획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금운용법인의 범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기금운용법인(①항)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②항)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2.3 재무능력(F)-④의 단서에서는 기금운용법인이 재무적투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동항에서 규정한 기관투자자도 일반적으로 기금운용법인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재무능력이 있는 바,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범위를 기금운용법인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①항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만을 의미합니다.
- 2.3 재무능력(F)-④의 단서에 따라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재무적투자자는 기금운용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질의 59.

본문내용(사업신청서 평가계획)

- (1) 출자자구성 등

평가요소	평가점수	적용기준
중소기업 출자·시공 참여요소 (6)	출자·시공사수 - 2개사 이상(6) - 1개사 (3) - 없음 (0)	중소기업 출자자수와 시공사수의 합계

질의내용

- 중소기업 출자·시공 참여요소 평가시 평가기준은 ‘중소기업 출자자수와 시공사수의 합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1개의 중소기업이 출자와 시공을 동시에 할 경우, ‘중소기업 출자자수와 시공사수의 합계’는 1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2개로 판단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 1개 중소기업이 출자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중소기업 출자자수와 시공사수의 합계’는 1개로 판단합니다.

질의 60.

본문내용(사업신청서 평가계획)

- (2) 건설보조금 수준(200점)

- ① 사업신청자가 2개 이상인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자 간 상대평가함.

[건설보조금 평가산식(사업신청자가 2개 이상인 경우)]

$$y = \frac{\text{최저제안건설보조금(불변가격)}}{\text{제안건설보조금(불변가격)}} \times 100\text{점}$$

질의내용

- 상기 평가산식에서는 최저제안건설보조금(불변가격)/제안건설보조금(불변가격) × 100점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보조금에 대한 평가점수는 상기 항목에 대한 제목 및 배점기준표 등에서 200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산식에서 곱하는 100점을 오기로 보고 200점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상기 산식의 “100점”은 “200점”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질의 61.

본문내용

- (2) 사업구간
 - ① 설계 및 시공 범위
 - 본 사업 신설구간 : 인천광역시 인천대입구역~서울특별시 용산역(약 40km)
 - * 신설구간은 지하로 계획하여야 함
 - ** 서울특별시 용산역~상봉역(경춘선 접속부) 약 20km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하는 신설구간이며, 고속/준고속 철도 등과 공용 가능 구간임

질의내용

- 본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는 시·종점 좌표(X, Y, Z)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공사” 입찰공고서(국가철도공단, 2022.8.3.)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62.

본문내용

- (2) 사업구간
 - ① 설계 및 시공 범위
 - * 신설구간은 지하로 계획하여야 하고, 신설구간 내 정거장의 위치는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되, 정거장의 심도는 40m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함

질의내용

- “정거장의 심도 40m”는 토피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굴착면 기준인지를 질의합니다.

[답변]

-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2017.3.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61호)”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63.

본문내용

· (8) 공통 및 일반사항

- ⑦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국토교통부, 2021.6)”에 반영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는 아래 조건을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서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과 본사업 부천종합운동장역 직결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중략)

- ⑨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열차 중앙선 운행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경우 본사업시행자는 이를 반영한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질의내용

- 본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및 ‘중앙선 운행’계획에 대한 자료(직결 범위, 차량 편성규모 및 운행횟수 등)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열차 중앙선 운행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 내부 검토(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64.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2.2 세부 고려사항

- 7) 차량기지는 본사업의 열차운영, 검수량(경정비/중정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설규모(입출고선 포함)로 계획하여야 하며, 경춘선·중앙선 열차운행에 지장을 최소화해야 하며, 재정구간(용산~상봉)이 선개통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검수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 15) 재정구간(용산~상봉)이 먼저 개통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개통에 따른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이 우선 개통하는 경우 본사업의 차량기지가 준공되기 전까지 차량 검수, 유치, 주차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각종 운영계획을 수립을 위해 재정구간의 사업추진 일정 계획을 질의합니다.
· 재정구간의 혼용열차운행에 대한 시스템호환성 검토를 위해 중앙선 운행차량에 대한 제원 자료 및 운영계획을 질의합니다.

[답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공사” 입찰공고서(국가철도공단, 2022.8.3.)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65.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3) 검수시설 분야

라) 검수규모 및 검수/청소체계

(1) 사전검토 용역보고서[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1) 등을 참고하여 1편성당 6량 이상으로, 검수규모 및 검수/청소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검수종별		약호	검 수 기 준		검수 소요시간
			주행거리	회기한도	
경정비	기본정비	ES	3,500km	7일	3시간
	제한정비	LI-4	60,000km	4개월	8시간
중정비	-	GI-4	720,000km	4년	13일
	-	GI-8	1,440,000km	8년	16일
	차륜교환	NWC	차륜교환 (차륜삭정:WC)		1일 1량
	임시정비	T	경수선 T1, 중수선 T2		-
	특종검수	R	경수선 T1, 중수선 T2		-

* 차량종류별 정비 주기 적용은 주행거리를 적용하고, 회기한도를 두어 안전성을 확보

* GTX-B 노선 차량제작사(사업자)가 차량 안전, 성능, 수명,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검수 및 청소기준 적용 가능

	구분	주기	소요시간
청소체계	일상청소	3일	1시간
	전반청소	30일	8시간

질의내용

· 검종별 검수소요시간은 차량기지별 차종 및 담당차량수와 운영기관별, 차량조성별(편성당량수), 편성당 투입인원수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나, 검수 및 청소작업시간이 고정되어 입찰자의 창의적인 설계 및 효율적인 입찰제안을 저해하고 있는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설계획 및 운영(인원)계획 수립을 위해 검수 및 청소 소요시간의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 사업신청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하게 차량 안전, 성능, 수명,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검수규모 및 검수/청소체계를 계획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66.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1) 운영계획
 - 가) 시설운영계획
 - (2) 차량기지 운영계획
 - (나) 차량기지 검수정보 시스템은 각 노선 철도운영자의 통합정보시스템과의 호환 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신설되는 차량기지 검수정보시스템은 GTX-B 차량만 단독으로 검수를 수행하는 차량기지로 GTX-B 차량의 검수기록을 각 노선 철도운영자의 통합정보시스템과 호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각 노선 철도운영자”가 GTX-B 사업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타 노선 운영자를 의미한다면 타 노선과 호환 되도록 검수정보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는 사유를 질의합니다.

[답변]

- 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운영사 자체 통합정보시스템과 호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운영 시에는 사업신청자가 자유롭게 제안 가능합니다.

질의 67.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나) 연동장치
 - (3) 열차가 정차할 정거장을 지나치지 않도록 신호를 제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제 설비 및 차상신호설비와 연계되어야 한다.

질의내용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연동장치는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연동하게 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분기기가 있는 역(연동역)에 설치합니다.
분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역(일반역)의 경우에도 (3)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분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역(일반역)의 경우에도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68.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2) 세부 고려사항
 - 가) 차량 요구제원
 - (2) 화재대피를 위한 구조
 - (나) ③ 차량 내에 연기 및 열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여 종합제어장치와 연동되어 화재 발생 시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화재경보가 전송될 수 있는 화재감지장치

질의내용

-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를 “철도교통관제센터로” 문구가 수정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질의합니다.

[답변]

- 상기 문구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가 아닌 “철도교통관제센터로”를 의미합니다.

질의 69.

본문내용

- 차량기지과 관련하여, 1.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범위 (2) 사업구간 항목에 “- 차량기지 : 남양주시 일원 1개소 신설” 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상기 “차량기지 신설”이라는 의미가 남양주시 내의 기존 차량기지의 용량을 검토하여 기존 차량기지 부지 내에 GTX-B 차량 수용 시 필요한 일부 시설 증설 및 추가 신설을 했을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차량기지는 남양주시 일원에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70.

본문내용

- II. 사업신청 및 시행 조건 10. 기타 사업시행 기준 10.1 부속사업계획

질의내용

- II. 사업신청 및 시행 조건 10. 기타 사업시행 기준 10.1 부속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부속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서 제7권 부대사업분야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부속사업계획은 제7권 “부대사업분야 사업신청서”에 포함되어 작성합니다.

질의 71.

본문내용

- II. 사업신청 및 시행 조건 10. 기타 사업시행 기준 10.2 부대사업계획 (1)항에 “사업신청자는 역세권 복합개발 또는 건물형 출입구를 활용한 공공주택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으며, 10.2 부대사업계획 (5)항에는 “사업신청자가 건물형 출입구를 제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선행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보상은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시행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직접 용지를 보상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직접 용지 보상을 수행하는 것은 보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법적지위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이 있어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상기 10.2 부대사업계획 (5)항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보상”의 범위가 다음의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 1) 공공주택 등 부대사업을 제안한 건물형 출입구에 대한 보상 업무는 본 사업의 다른 부지와 같이 주무관청이 시행하나 사업시행자가 보상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짐
- 2) 공공주택 등 부대사업을 제안한 건물형 출입구에 대해 해당 부지에 대한 모든 보상업무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짐

[답변]

- 부대사업에 대한 보상 업무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보상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단, 건물형 출입구를 활용한 부대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건물형 출입구 부지 중 본사업시설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출입구 등의 부지에 한하여 주무관청이 보상 비용을 부담하며, 이 경우에도 전체 보상비는 1,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물형 출입구 부지의 보상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72.

본문내용

- 사업신청 범위 2 사업내용 (2) 사업구간 ①항 설계 및 시공범위에 의하면 “신설구간 내 정거장의 위치는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되, 정거장의 심도는 40m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함.”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이 규정은 기준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다음과 같이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레일면 계획고(R.L.)
 - 2) 터널바닥면 계획고(F.L.)
 - 3) 승강장 계획고이에 심도판정의 기준위치를 질의합니다.

[답변]

-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2017.3.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61호)”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73.

본문내용

- 1. 사업신청 범위 2 사업내용 (8) 공통 및 일반사항의 ②의 하위항목에 의하면 “- 사업신청자는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 정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정속도 80km/h 이상이 되도록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추가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서 서울역 또는 청량리역까지의 소요시간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상기 문구에서 소요시간의 30분 이내의 기준이 다음의 두가지 경우 중 어느것인지 질의합니다
 - 1) 송도→서울역, 청량리→마석
 - 2) 송도→청량리, 서울역→마석

[답변]

- 소요시간 30분 이내의 기준은 인천대입구역⇄서울역 및 청량리역⇄마석역 구간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질의 74.

본문내용

- 1. 사업신청 범위 2 사업내용 (8) 공통 및 일반사항의 ②의 하위항목에 의하면 “- 사업신청자는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 정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정속도 80km/h 이상이 되도록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추가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서 서울역 또는 청량리역까지의 소요시간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추가 정거장 설치 검토시, 운행시간 산정에 적용되는 정차시간 및 여유시간(또는 여유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여유시간(또는 여유율)은 고려하지 않으며, 정차시간은 30초 이상을 적용하여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75.

본문내용

- 1. 사업신청 범위 2 사업내용 (8) 공통 및 일반사항의 ⑪에 의하면, “사업신청자는 본사업 노선 이용자를 구분·확인할 수 있고, 타 노선 사업시행자와의 합리적인 운임 정산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임징수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을 참고하여 서울역에서의 환승을 고려한 환승게이트 설치방안을 제안하여야 함.”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서울역은 향후 발주될 재정구간의 과업에 해당하므로 민자구간 사업신청자는 서울역 환승게이트 설치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과업범위를 국한하고 해당 사업비를 제외시켜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사업신청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을 참고하여 서울역에서의 환승을 고려한 환승게이트 설치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질의 76.

본문내용

- II.사업신청서 작성 및 평가방법 1. 사업신청서 작성 기본 조건 (3)항에 의하면 “물가변동률 연 2%를 기준으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으로 정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가격산출기준일(2020년 12월)부터 고시일(2022년 12월(→7월) 사이의 물가는 본 고시문 상의 물가변동률 연 2%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지, 실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작성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 가격산출기준일(2020년 12월말)부터 고시일 직전(2022년 6월말)까지는 실제 물가변동률(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고시)을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질의 77.

본문내용

- II. 사업신청서 작성 및 평가방법 2 사업신청서 작성 세부 조건에 의하면 “(13) 사업신청서 작성 시 관련기관 협의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여름·가을철 생태계조사 등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첨부토록 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사업신청서의 기본 제출서류 내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별권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록)으로 제출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부록으로 별도 제출(제출서류 페이지 합산에 불포함)합니다.

질의 78.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1. 사업신청서의 구성 및 제출부수에서 제시된 표에 의하면 제출부수(원본)에 USB의 매수가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제출부수(원본) 중 USB는 재무모델을 제외한 각 보고서(요약보고서, 기술분야 본보고서, 교통수요분야 본보고서, 재무분야 본보고서, 통합기본설계보고서, 종합해석보고서, 부대사업분야 사업신청서) 당 2매(총14매)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각 보고서를 포함하여 1개의 USB로 제출하여도(총 2매)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각 보고서를 포함하여 1개의 USB로 제출(총 2매)합니다.

질의 79.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1. 일반사항 1.2 유의사항에는 BIM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12) ~ BIM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까지 BIM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13) 본 설계 및 시공은 BIM을 적용하여 3차원 노선계획, 주요 구조물(부재)에 대한 3차원 모델링과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질의내용

- 상기 제시된 12) 및 13)항에 제시된 BIM 관련 내용 중 BIM 전담부서 운영, 3차원 모델링 및 속성정보를 활용한 설계도면 작성 등은 일반적으로 기본설계 수준인 입찰단계 시에는 시행하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 BIM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80.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1. 일반사항 1.2 유의사항에는 BIM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있습니다.
14)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시스템(RAFIS)과 BIM 데이터를 연동하여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구축하여 관련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상기 14)항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시스템(RAFIS)의 구축 일정 및 RAFIS와 연동할 BIM 데이터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철도시설이력관리종합시스템(RAFIS)은 현재 구축 중이며('23년 예정),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81.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2. 설계 2.1 일반고려사항 3) 에 의하면 “사업기간중에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그 적용여부 및 적용에 다른 추가비용의 부담주체 및 방식 등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이에 사업신청서 작성기간 중에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고시일 이전 개정은 사업신청서 작성시 적용하고 고시일 이후 개정은 사업신청서 작성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사업신청서는 사업신청서 제출시까지의 최신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므로, 사업신청서 작성기간 중에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방서 및 설계기준 상의 부칙 등 그 적용기준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질의 82.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2. 설계 2.2 세부 고려사항 18)항에 의하면 “10km 이상의 터널에 제연 또는 배연설비를 설치 시 터널의 축소모형을 이용한 모의 화재실험을 실시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완시켜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터널의 축소모형을 이용한 모의화재실험은 정량적 위험도 분석(QRA) 시행이후 모형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시설계과정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소모형을 이용한 모의화재실험을 실시설계단계에서 수행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모의화재실험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행합니다.

질의 83.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2. 설계 2.2 세부고려사항 38)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구간 및 재정구간 접속부에 대한 평면 및 종단 선형이 일치하도록 인터페이스를 반영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이 규정은 다음 두가지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 1)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본사업구간 및 재정구간 접속부에 대한 평면 및 종단선형에 대한 변경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본 사업구간 및 재정구간 접속부에 대한 평면 및 종단 선형은 일치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2)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본 사업구간 및 재정구간 접속부에 대한 평면 및 종단선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철도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본사업구간과 및 재정구간 접속부의 종단 및 평면선형을 변경하여 제안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 본사업구간에서 재정사업구간을 잇는 접속부 종단 및 평면 선형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2.3.)”의 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 84.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2. 설계 2.7 차량기지분야 2) 기지배선계획 차)항에 “입출고선 계획시 구조물은 본선과 경합이 되지 않도록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본선 공사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 본선에서 입출고선을 평면분기로 적용하여 본선 열차운행과 입출고선 열차운행계획을 반영한 평면교차의 지장율이 산정결과 관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본선에서 입출고선 평면분기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 입출고선 본선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질의 85.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2.8 전철전력분야 2) 세부 고려사항 나) 변전설비에는 변전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3) 본 사업시설 신설 및 공용구간에 설치될 변전소(SS, SP,SSP) 위치는 지상 또는 지하, 단독 또는 역사, 환기실 등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지하 구간에 변전설비의 반·출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상 구간에 별도의 건축물로 신설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3)항은 변전소(SS, SP, SSP) 위치를 “지상 또는 지하”로 제시하고 있고, (5)항은 ”지상 별도의 건축물로 신설“로 제시되어 내용이 상충되는 바 어느 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86.

본문내용(성과요구수준서)

- 2. 설계 2.10 통신설비분야 2) 세부고려사항 라) 역무자동화설비 4)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요금체계가 상이하거나 구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역무자동화설비 정산센터 설치를 검토해야 하며, 환승역사에 환승게이트 등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질의내용

- 환승역사에 환승게이트 등 설치를 할 경우 현재와 같이 노선별 승강장을 분리, 차단하는 ‘폐쇄식 환승게이트’ 적용만 가능한지 또는 승강장은 공용하고 승강장내에 설치된 전용단말기(kiosk, NFC태그 등)를 활용하여 노선별 요금정산이 가능한 ‘개방식 환승게이트’도 적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 사업신청자는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본사업노선 이용자를 구분·확인하여 타 노선 사업시행자 등과의 합리적인 운임 정산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임징수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질의 87.

본문내용

- [p43] II.사업신청및시행조건 /8.5.민원처리 제②항 및 ③항

질의내용

- 시설사업기본계획 8.5조 ③항(p43)에서는 보상업무의 지연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분은 당사자 간 분담하게 되어있으나, 사업기간 조항(p.15)에서는 용지보상기간 증감 시 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없이 공사기간만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용지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간접공사비 혹은 총투자비(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 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8.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 용지보상기간의 증감 등으로 간접공사비 또는 총투자비 등의 증가분이 발생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88.

본문내용

- [p55] III.사업신청서 작성 조건/2.제반조건 (9)건설보조금 투입조건

질의내용

- 건설보조금 금액을 균등배분하여 투입을 가정할 경우 사업제안자의 공사공정률에 따라 총사업비보다 건설보조금이 더 많은 분기가 발생하여 마이너스 민간사업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의 의미가, 분기별 총사업비 대비 건설보조금의 비율의 균등인 것인지, 단순히 건설보조금(불변) 금액의 균등인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 분기별로 건설보조금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89.

본문내용

- [p75] II.사업신청서 작성 및 평가방법/1.사업신청서 작성 기본조건 (3)물가변동률

질의내용

- ‘가격산출기준일(2020년 12월 31일)’부터 ‘고시일(2022년 7월 4일)’의 물가 반영에 대하여 본 고시문 상의 물가변동률 연 2%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지, 혹은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CPI)을 반영하여 작성하는지 여부와 만일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는 경우에는 고시일의 직전월(2022년 6월말)까지 반영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 가격산출기준일(2020년 12월말)부터 고시일 직전(2022년 6월말)까지는 실제 물가변동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고시)을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질의 90.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p35, p38] <양식3-1> 및 <양식4>

질의내용

- <양식3-1> 및 <양식4>의 경우 컨소시엄의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별도로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출자자가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일 경우 동 양식의 기명날인의 주체가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지 혹은 집합투자기구의 예정투자자(기관투자자)인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출자자(기관투자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질의 91.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p49~p59] <양식13-2> ~ <양식14-4>

질의내용

- 본 고시문 첨부2. 사업신청서 평가계획 p10 2.3③㉠에서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예정 기관투자자의 (조건부)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관투자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직접 출자자가 아님을 감안하여 <양식13-2>~<양식13-8>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본 고시문 첨부2. 사업신청서 평가계획 p10 2.3③㉠에서 타인자본의 경우 조달하려는 금액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대출의향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양식14-1>~<양식14-4>을 일부 수정(예: 금액의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 <양식 13-1>, <양식 13-2>를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양식14-1>~<양식14-4>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질의 92.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p56~p58] <양식14-1> ~ <양식14-3>

질의내용

- <양식14-1>~<양식14-3>상의 문구가 ‘총민간투자비 및 예비자원 중 타인자본 조달예정액(연도별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타인자본 조달총계와 사업기간 중의 경상적·우발적 예비비를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부)대출확약서는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예정액에 대하여 확약을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의 경상적·우발적 예비비는 추가(조건부)대출확약서의 제출을 통해 확약하게 되는 바 <양식14-1>~<양식14-3>의 문구를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예정액(본 사업과 예비자원 조달액 중 타인자본 조달액을 포함)”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 <양식14-1>~<양식14-3>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질의 93.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p56~p58] <양식14-1> ~ <양식14-3>

질의내용

- <양식14-1>~<양식14-3>상의 문구가 ‘총민간투자비 및 예비자원 중 타인자본 조달예정액(연도별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타인자본 조달총계와 사업기간 중의 경상적·우발적 예비비를 포함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부)대출확약서는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예정액에 대하여 확약을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의 경상적·우발적 예비비는 추가(조건부)대출확약서의 제출을 통해 확약하게 되는 바 <양식14-1>~<양식14-3>의 문구를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예정액(본 사업과 예비자원 조달액 중 타인자본 조달액을 포함)”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 <양식14-1>~<양식14-3>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질의 94.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p75~83] <양식22>~<양식25>, <양식30>

질의내용

- <양식22>~<양식25> 및 <양식30>의 경우 단위를 백만원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양식26>~<양식29>의 경우 단위를 억원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사업의 규모를 감안하여 <양식22>~<양식25> 및 <양식30>의 단위를 억원 단위로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 <양식22>~<양식25> 및 <양식30>의 단위를 억원 단위로 수정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질의 95.

본문내용(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p89] <양식31-5>

질의내용

- <양식31-5>의 분기별 물가지수 및 연도별 물가지수를 작성시 가격기준일로부터 해당분기 및 해당년도의 물가지수를 산정하는지 혹은 해당분기의 직전분기 물가 및 해당년도 직전년도말의 물가지수를 산정하여 작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 해당년도의 물가지수는 직전년도(직전년도 4분기)까지의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96.

본문내용(사업신청서 평가계획)

- [p9] II.1단계평가/2.1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2.3 재무능력(F) ① ㉔

질의내용

- 출자자의 과거 5년 간 ‘영업현금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산정시 순현금흐름의 실적은 감사 받은 기간의 현금흐름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감사받지 아니한 기간에도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등 확인원을 부속서류로 제출하면 순현금흐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 순현금흐름의 실적은 감사받은 기간의 현금흐름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97.

본문내용(사업신청서 평가계획)

- [p10] II.1단계평가/2.1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2.3 재무능력(F) ③ ㉔

질의내용

- 출자자가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예정투자자의 (조건부)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별도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예정투자자의 수익증권매입의향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와 이를 제출하게 되면 자유양식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 설립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기관투자자의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질의 98.

본문내용(사업신청서 평가계획)

- [본문 p49~51] II.사업신청 및 시행조건/10.2 부대사업계획
- [첨부2 p40] III.2단계평가/2.4 가점 평가항목 및 배점 (2) 부대사업 이익 공유

질의내용

- 고시문 본문 10.2 (2)(p49)에서는 부대사업 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5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첨부2의 2.4 (2)(p42)에서는 부대사업 이익의 평가로 부대사업 이익 중 주무관청 귀속분(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문 P49에 명시된 배분대상이 되는 부대사업 이익의 구체적인 정의 및 이에 따라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부대사업 이익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 부대사업 이익은 역세권 복합개발 또는 주택, 상가 등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매각이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신청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부대사업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5로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주무관청 귀속분(원)을 평가산식에 따라 상대평가합니다.

질의 99.

본문내용(사업신청서 평가계획)

· (2) 건설보조금 수준(200점)

① 사업신청자가 2개 이상인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자 간 상대평가함.

[건설보조금 평가산식(사업신청자가 2개 이상인 경우)]

$$y = \frac{\text{최저제안건설보조금(불변가격)}}{\text{제안건설보조금(불변가격)}} \times 100\text{점}$$

② 사업신청자가 1개(단수)인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절대평가함.

- 중략 -

질의내용

· 위 평가기준에 따르면 ①의 경우 최저제안건설보조금을 제안한 신청자는 최대 100점으로 평가받고 다른 신청자는 최저제안금액과 비율대로 100점이하 점수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 경우 만점이 200점임에도 어느 신청자도 만점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평가되며 결국 본 사업의 총점 만점이 1000점에서 900점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됩니다. 위 평가 기준이 오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건설보조금 평가산식(사업신청자가 2개 이상인 경우)]

$$y = \frac{\text{최저제안건설보조금(불변가격)}}{\text{제안건설보조금(불변가격)}} \times 200\text{점}$$

[답변]

· 상기 산식의 “100점”은 “200점”으로 하여 평가합니다.